

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## 확정일자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처리기간 즉시		
임차인 (신청인)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본점)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임대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(본점)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임대차 계약내용	상가건물 소재지(임대차 목적물) <small>상가건물명, 동, 호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</small>		
	계약일	임대차기간	
	보증금	차임	
	면적(㎡)	㎡ 확정일자번호	

※ 아래 난은 대리인에게 확정일자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적습니다.

신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확정일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.

위임 받은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신청인과의 관계	전화번호

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자 (서명 또는 인)

### 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2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인(또는 대리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도면(뒷면 상가건물 도면 양식 또는 별지로 제출)
------	--

### 유의사항

- 임차한 상가건물이 주로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대상이며, 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등 공적 장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적어야 합니다.
-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## 상가건물 도면

※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임차인 (신청인)	성명(법인명)  (서명 또는 인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상호	사업지등록번호	
	주소(본점)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
[ 도 면 ]

- 작성요령**
- 상가건물의 전체면적(m<sup>2</sup>)과 해당 임차부분의 면적(m<sup>2</sup>) 등을 표시합니다.
  -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, 통로·주출입구 등을 표시합니다.
  - 해당 임차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합니다.
  -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최종 총면적과 위치를 표시합니다.
  - 상가건물의 형상, 길이, 위치 등을 적어 위 도면으로 제3자가 해당 임차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.